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희망의 약속 한국자활복지개발원 · CJ대한통은 업무협약서

"한국자활복지개발원"과 "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"(이하 양 당사자를 "업무협약 체결기관"이라 함)은 취약계층 물류 인적자본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.

- 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"업무협약 체결기관" 상호간 협력사업 활성 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원칙) "업무협약 체결기관"은 상호 지원 및 협력하는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.
- 제3조(협력분야) "업무협약 체결기관"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,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 - 1. 취약계층 물류 관련 인적자본 향상 교육 추진 시 업무체결 기관이 보유한 컨텐츠, 자원 활용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.
 - 2. 온·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다.
 - 3. "업무협약 체결기관"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 - 4. 기타 "업무협약 체결기관"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- 제4조(비밀유지) "업무협약 체결기관"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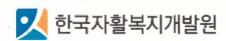
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협의조정)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 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2021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.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 ② 본 협약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협약의 목적에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0년 7월 14일



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병학

०। भि है।



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희

